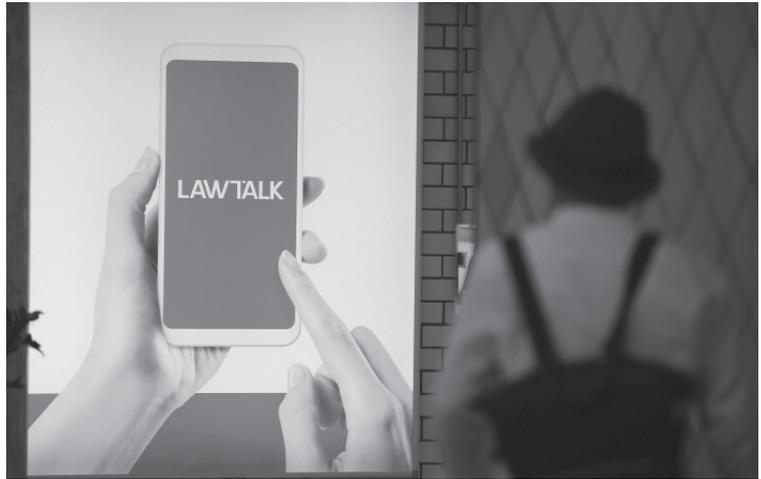


## 법무매거진

대한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초강수...  
'역사에 남을 최악의 결정'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지난 8월 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위반 경위·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

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지난 5월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석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적용됐다. 광고비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이 규정의 핵심이다.

변협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 500명,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1440명의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국내 개업 변호사가 총 2만500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0% 넘는 변호사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변협은 이날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도 입장문을 내고 ‘변협의 조치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시장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맞섰다.

로앤컴퍼니는 “2014년 로톡 서비스 출시 이래 1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변협은 (로톡이)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한다고 단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협은 과거 8차례 로톡의 광고모델이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로앤컴퍼니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규정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수가 지난 3일 기준 2800여명으로 지난해 3월 말 3900여명보다 28% 감소했다.

(출처/ 경향신문 & 경향닷컴)